

1. 의결주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학기관의 회계기준은 사학기관의 운영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학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사학기관들에 불필요하게 부담을 부과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이에 따라 사학기관의 예·결산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학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 처리 기준을 현행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통용되는 회계 용어가 반영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산 제출 전 절차 완화(안 제4조, 제6조)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이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편성요령을 정하고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육부장관에게 예산을 제출하기 전까지 이행하여야 할 절차별 이행 기한까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은 낮기 때문에, 이사회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외의 기한 관련 규제를 폐지함.

나. 결산 제출 전 절차 완화(안 제42조)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를 심의·확정하여 3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육부장관에게 결산을 제출하기 전까지 이행하여야 할 절차별 이행 기한까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은 낮기 때문에, 이사회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결산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외의 기한 관련 규제를 폐지함.

다. 국가장학금 세입 처리 방식 변경(안 별표2)

사학기관은 국가장학금지원금이 교부될 때 이를 한 차례 세입 처리하고, 교외장학금으로 세출 후 등록금이 납부될 때 또 한 차례 세입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이 세입에 이중 계상 되는 문제가 있어, 결산서 작성 시 국가장학금지원금과 교외장학금이 내부거래 처리되도록 하여 이중 계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라. 회계 처리 기준, 용어 등 정비(안 제3조 등)

자산재평가적립금의 회계처리 방식을 적립금에서 기본금조정으로 변경,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정 신설, 이월금 내역 구분 중 계속비이월 항목 신설, 미지급금 유형 세분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정비, 그 밖의 의미가 불분명한 문구를 조정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23. ~ 2023. 2. 1.) 예정

3) 행정규제 :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결과 규제 대상 아님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전단 중 ““대차대조표기준일””을 ““재무상태표기준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재평가적립금등 특정한”을 “특정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월전”을 “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개시 30일”을 “개시”로, “개시 20일”을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시 35일”을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확정된”을 “제4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금계산서·대차대조표”를 “자금계산서·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차대조표상”을 각각 “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대차대조표 작성의 원칙)”을 “(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차대조표 기준일”을 “재무

상태표 기준일”로, “대차대조표를”을 “재무상태표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을 “(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1.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재산으로서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고 정한 자산

제33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6조 중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종합대차대조표”를 “종합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합산대차대조표”를 “합산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무상태표 및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제40조의 제목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등)”을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종료후 50일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종료후 결산서를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료후 2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를 “종료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을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심의·확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부장관”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5221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221 일반기부금	○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 단,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학교회계로만 세입 처리 가능
--	--	---------------	---	---	---

별표 1 제1호의 5231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231 교육부	○	○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 세목에서 국가장학금지원금과 기타지원금으로 구분하고,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합산시 당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수입을 지원 한 금액은 교외장학금 지출(4321)과 상계 처리하여 순액으로 표시
--	--	-------------	---	---	--

별표 1 제1호의 5322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322 대여료 및 사용료	×	○	강당·교실·기계·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대여하고 받는 이용료와 복사기·학교버스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	--	-------------------	---	---	--

				로부터 받는 사용료(임대보증금수입은 2221 임대보증금 수입에 계상하고, 법인의 수익용 재산 임대료수입은 5431 임대료수입에 계상한다)
--	--	--	--	--

별표 1 제1호의 2213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13 학교채 발행	☐	☐	학교채 발행에 따른 차입액
--	----------------	-----------------------	-----------------------	----------------

별표 1 제1호의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의 1110목 및 1120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10 유동자금	☐	☐	기초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금 총액
	1120 기타 유동자산	☐	☐	기초 재무상태표상의 기타유동자산 총액

별표 1 제1호의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의 2120목부터 2140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20 예수금	☐	☐	기초 재무상태표의 예수금 총액
	2130 선수금	☐	☐	기초 재무상태표상의 선수금 총액
	2140 기타유동부채	☐	☐	기초 재무상태표상의 기타유동부채 총액

별표 1 제2호의 4321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21 교외장학금	☐	☐	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합산시 당해 5231 교육부 보조금 중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수입을 지원 한 금액은 교외장학금 지출(4321)과 상계처리하여 순액으로 표시
--	---------------	-----------------------	-----------------------	---

별표 1 제2호의 1319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19 건설중인자산	☐	☐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 및 중
--	----------------	-----------------------	-----------------------	-----------------------------

				도급과 건설 관련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건설을 위해 지출한 도급금액 등 포함)
--	--	--	--	---

별표 1 제2호의 2112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2 유동성장기부채상환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장기차입금, 차관, 학교채의 실제상환액(장부가액이 아님)
--	-------------------	---	---	--

별표 1 제2호의 2213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13 학교채상환	○	○	학교채의 상환액
--	---------------	---	---	----------

별표 1 제2호의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의 1110목 및 1120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10 유동자금	○	○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금 총액
	1120 기타 유동자산	○	○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기타유동자산 총액

별표 1 제2호의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의 2120목부터 2140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20 예수금	○	○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예수금 총액
	2130 선수금	○	○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선수금 총액
	2140 기타유동부채	○	○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기타유동부채 총액

별표 2의 제목 중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 (제17조 관련)”을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제1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1124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24 가지급금	○	○	액수나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각종 비용의 선지급액 (소액현금은 1111 현금에 계상한다)(결산시 비망계정)
--	--	--------------	---	---	--

별표 2 제1호의 1319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19 건설중인자산	○	○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 및 중 도금과 건설 관련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건설을 위 해 지출한 도급금액 등 포함)
--	--	----------------	---	---	--

별표 2 제2호의 2112목 및 2113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12 유동성장기부채 2113 유동성학교채발행차금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장기차입금, 차관, 학교채 등 상환기간 1년 이내 도래하는 학교채 액면가와 실제 발행액의 차금 중 미상각액(할증발행차금 +, 할인발행 차금 - 표시)
--	--	---------------------------------------	---	---	---

별표 2 제2호의 2132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32 학교채선수금	○	○	학교채 청약금(미발행 금액)
--	--	----------------	---	---	-----------------

별표 2 제2호의 2142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42 가수금	○	○	송금자나 입금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지로계좌 등의 입금액 (결산시 비망계정)
--	--	-------------	---	---	---

별표 2 제2호의 2213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13 학교채	○	○	학교채 미상환액(액면가)
--	--	-------------	---	---	---------------

별표 2 제2호의 2214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14			
--	--	------	--	--	--

		학교채발행차금	○	○	학교채 발행 시 액면가와 실제발행액의 차금 중 미상각액(할증발행차금 +, 할인발행차금 - 표시))
--	--	---------	---	---	--

별표 2 제2호의 2312목부터 2317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12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3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	구축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구축물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4 기계기구감가상각누계액	○	○	기계기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기구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5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	○	집기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집기비품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6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운반구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7 도서감가상각누계액	○	○	도서의 감가상각 누계액 (도서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별표 2 제2호에 과목 2500관, 2510항, 2511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510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25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법인 및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준비금(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3161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61			※ 3151 항목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	--	------	--	--	---------------------------------------

별표 2 제2호의 3174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74 자산재평가차액	○	○	자산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익(이익은 +, 손실은 -)
--	--	-----------------	---	---	------------------------------

					로 표시)
--	--	--	--	--	-------

별표 2 제2호의 3131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31 전기이월운영차액	○	○	전기 이월운영차액(전기 재무상태표의 3130과 일치해야 한다)
--	------------------	---	---	------------------------------------

별표 3 제1호의 5213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213 자산전입금	×	○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입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받는 현금 및 물품
--	---------------	---	---	--

별표 3 제1호의 5221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221 일반기부금	○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 단,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학교회계로만 세입 처리 가능
--	---------------	---	---	---

별표 3 제1호의 5231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231 교육부	○	○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 세목에서 국가장학금지원금과 기타지원금으로 구분하고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합산시 당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수입을 지원 한 금액은 교외장학금 지출(4321)과 상계처리하여 순액으로 표시
--	-------------	---	---	--

별표 3 제1호의 5241목 및 5242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241 산학협력단전입금	×	○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및 물품
	5242 학교기업전입금	×	○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및 물품

별표 3 제1호의 5322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322 대여· 사용료	×	○	강당, 교실, 기계·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대여하고 받는 이용료와 복사기, 학교버스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임대보증금수입은 2221 임대보증금수입에 계상하고, 법인의 수익용 재산 임대료수입은 5431 임대료수입에 계상한다)
--	--	--------------------	---	---	--

별표 3 제1호에 과목 5500관, 5510항, 5511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	○	
	551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	○	
		55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	○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이체)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환입액을 처리하기 위한 금액(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별표 3 제2호의 4253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253 무형고정자산상각비	○	○	무형고정자산의 해당 회계연도 상각액
--	--	-------------------	---	---	---------------------

별표 3 제2호의 4321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21 교외장학금	○	○	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합산시 당해 5231 교육부 보조금 중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수입을 지원 한 금액은 교외장학금 지출(4321)과 상계 처리하여 순액으로 표시
--	--	---------------	---	---	--

별표 3 제2호의 4411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410 이자비용		○	○	
		4411 지급이자	○	○	차입금·차관 등에 대한 이자지급액 (학교채발행 차금상각액 포함)

별표 3 제2호에 과목 4600, 4610, 46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	○	
	461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	○	
		46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	○	법인 및 학교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하여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준비금 전입액

별지 제1호서식의 1. 수입 중 “(단위: 천원)”을 “(단위: 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2. 지출 중 “(단위: 천원)”을 “(단위: 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 제7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제8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단위: 천원)”을 “(단위: 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단위: 천원)”을 “(단위: 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작성방법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1. 수입 중 “(단위: 천원)”을 “(단위: 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2. 지출 중 “(단위: 천원)”을 “(단위: 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작성방법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4호의7서식의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의 작성방법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유형고정자산 명세서의 작성방법 제1호 중 “대차대

조표”를 “재무상태표 상”으로 하고,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 상”으로 하고, 제3호 중 “대차대조표 상”을 “재무상태표 상”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8서식의 무형고정자산 명세서의 작성방법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제5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작성방법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래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은 비고란에 별도로 표기합니다.

- 학교 또는 법인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급여 및 수당): 미지급 임금
- 학교 또는 법인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미지급 4대 보험 기관부담금
- 학교 또는 법인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연체되고 있는 제세공과금: 미지급 제세공과금

별지 제4호의10서식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6서식의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의 내역 중 “(5)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을 “(5)사고이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로 한다.

별지 제4호의16서식의 내역 및 사용계획의 내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역 및 사용 계획	사고이월			
	소 계			
	명시이월			
	소 계			

	계속비이월			
	소 계			
	기타이월			
	소 계			

별지 제4호의16서식의 작성방법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계속비이월 :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미리 일괄하여 정해놓은 경우로서, 당해연도 부담액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

※ 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사업의 소요경비를 계속비의 형태로 지출하기로 사전에 정하고, 계속비가 지출되는 첫 회계연도의 학교법인 및 학교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 시 계속비 편성에 대한 의결을 받아 계속비이월 자금을 편성해야 하며, 계속비 편성 기간은 첫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필요 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7호 및 제48호 서식 활용 가능)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대차대조표 제목 중 “종합대차대조표”를 “종합재무상태표”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종합대차대조표”를 “종합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운영계산서 제1호의 “종합대차대조표”를 “종합운

영계산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합산자금계산서에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작성방법

1. 법인일반회계와 학교회계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자금수입과 자금지출을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2. ②란은 법인 산하 모든 설치 학교회계(「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합산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은 법인일반회계와 학교회계간의 내부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은 ①번 법인일반회계와 ②번 학교회계 합산 금액에서 ③번 내부거래 금액을 제거한 후 금액을 기재 합니다.
5. ⑤란은 당해연도 최종 추가경정자금예산액(추가경정자금예산액이 없을시 본예산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의 합산대차대조표 제목 중 “합산대차대조표”를 “합산재무상태표”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합산대차대조표”를 “합산재무상태표”로 하며,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작성방법

1. 법인일반회계와 학교회계의 보고식 작성방법을 따릅니다. 자산총계는 부채 및 기본금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 ②란은 법인 산하 모든 설치 학교회계(「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

대학·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합산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은 법인일반회계와 학교회계간의 내부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은 ①번 법인일반회계와 ②번 학교회계 합산 금액에서 ③번 내부거래 금액을 제거한 후 금액을 기재 합니다.

5. ⑤란은 전년도 결산 합산재무상태표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의 합산운영계산서에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작성방법

1. 법인일반회계와 학교회계의 보고식 작성방법을 따릅니다. 운영수익 총계는 비용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 ②란은 법인 산하 모든 설치 학교회계(「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 대학·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합산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은 법인일반회계와 학교회계간의 내부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은 ①번 법인일반회계와 ②번 학교회계 합산 금액에서 ③번 내부거래 금액을 제거한 후 금액을 기재 합니다.

5. ⑤란은 전년도 결산 합산운영계산서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략)		-----.		
2. “ <u>대차대조표기준일</u> ”이라 함	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이 경우 <u>대차대조표</u> 에서 기준	일을 따로 정한 때를 제외하	2. “ <u>재무상태표기준일</u> ”-----		
고는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	다.	-----.		
3. ~ 10. (생략)		----- <u>재무상태표</u> -----		
11. “ <u>적립금</u> ”이라 함은 <u>재평가</u>		-----		
<u>적립금등</u> <u>특정한</u> 경영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	-----		
금으로서 기금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		
제4조(예산편성요령) ①법인의 이	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3. ~ 10. (현행과 같음)		
과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	시 <u>2월전</u> 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11. ----- <u>특정한</u> -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	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략)		-----.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①		제4조(예산편성요령) ①-----		

		----- <u>전</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
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
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
시 2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
정해야 한다.

②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
5일 전까지 학교전출금 등 학교
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
일이전까지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운
영계산서로 한다.

② (생략)

제17조(계정과목)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
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

----- 개시 -----

----- 개
시 -----
-----.

②----- 개시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

-----.

제16조(재무제표) ①-----
자금계산서·재무상태표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계정과목) ①-----

과목 명세표, 별표 2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② (생략)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①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②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제3절 대차대조표

제22조(대차대조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대차대조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 재무상태표
표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①-----

 ----- 재무상태표상-----

 -----.

②-----

 ----- 재무상태표상-----

 -----.

제3절 재무상태표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 재무상태표 기준일 -----

 ----- 재무상태표를 -----
 -----.

제23조(재무상태표) -----
 ----- 재무상태표-----

_____.

제24조(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①재무상태표-----

② (현행과 같음)

③-----

재무상태표-----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채무
상태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대손상각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
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 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①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

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1.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재산으로서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고 정한 자산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① 재무상태표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① -----
--- 재무상태표 -----

한다.

②·③ (생략)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①종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생략)

2. 별지 제6호서식(2)에 의한 종합대차대조표

3. (생략)

②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만을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생략)

2. 별지 제7호서식(2)에 의한 합산대차대조표

3. (생략)

제39조(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

----- 작성한다.

제37조(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①-----

-----.

1. (현행과 같음)

2. ----- 종합재무상태표

3.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합산재무상태표

3. (현행과 같음)

제39조(결산의 내용) -----
-----.

1. (생략) 2. <u>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u> 3. ~ 5. (생략) 제40조(<u>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등</u>) ①<u>대차대조표</u>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8. (생략) ②·③ (생략) 제42조(<u>결산서의 작성·제출 등</u>)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 계연도 종료후 50일이내에 결산 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이사장은 제39조 각호의 내용 및 제37조제2항의 합산재무제 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 내에 <u>교육부장관</u>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u>재무상태표 및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u> 3. ~ 5. (현행과 같음) 제40조(<u>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u>) ①<u>재무상태표</u>----- -----. 1. ~ 1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u>결산서의 작성·제출 등</u>) ①----- ---- <u>종료후 결산서를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까지</u> ----- -----. ②----- <u>종료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을 제 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 출하기 전까지</u> -----. ④----- ----- ----- <u>제1항 및 제2 항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u> -----.
--	---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1. 수입 항목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5100 등록금 및 수 강료수입	5110 등록금수입		×	○	
		5110 등록금수입	×	○	
		5111 학부입학금	×	○	대학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5112 대학원입학금	×	○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5113 학부수업료	×	○	대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5114 대학원수업료	×	○	대학원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5120 수강료수입	×	○	
	5200 전입 및 기부수입	5121 단기수강료	×	○	특별강좌·평생교육강좌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	○	
		5210 전입금수입	○	○	
		5211 경상비전입금	×	○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 비 등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
		5212 법정부담전입금	×	○	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 금(연금·의료보험 등)으로 받는 전입금
		5213 자산전입금	×	○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 입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 적으로 받는 현금
		5214 부속병원전입금	○	○	학교 또는 법인이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 학 등의 부속병원으로부터 전입받는 금액

5300 교육부대수입	5220 기부금수입	5215 특별회계전입금	○	○	특별회계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5216 교내전입금	×	○	교내 다른 회계 조직으로부터 받는 전입금(4516 교내전출금과 대응)
		5217 수익사업전입금	○	×	수익사업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5218 등록금회계전입금	×	○	비등록금회계가 등록금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세목 구분
			○	○	
		5221 일반기부금	○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 단,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학교회계로만 세입 처리 가능
		5222 지정기부금	○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5223 연구기부금 수입은 제외한다)
		5223 연구기부금	○	○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는 기부금
	5230 국고보조금수입		○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5231 교육부	○	○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 세목에서 국가장학금지원금과 기타지원금으로 구분하고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합산시 당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수입을 지원 한 금액은 교외장학금 지출(4321)과 상계 처리하여 순액으로 표시
		5232 기타국고지원	○	○	교육부 외 기타 정부 부처로부터 받는 보조금
		5233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524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		×	○	
		5241 산학협력단 전입금	×	○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5242 학교기업 전입금	×	○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5310 입사수수료수입		×	○	
		5311	×	○	4330 입시관리비와 대응

5400 교육외수입	5320 증명·사용료수입	입학 원서대	×	○	입학원서 판매대금
		5312 수험료	×	○	입시지원자로부터 받는 수험료수입
			×	○	
		5321 증명료	×	○	졸업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하고 받는 각종 수수료수입
	5330 기타교육부대 수입	5322 대여료 및 사용료	×	○	강당·교실·기계·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대여하고 받는 이용료와 복사기·학교버스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로 부터 받는 사용료(임대보증금수입은 2221 임대보증 금수입에 계상하고, 법인의 수익용 재산 임대료수입 은 5431 임대료수입에 계상한다)
			×	○	
		5331 논문심사수입	×	○	학생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료 수입(4324 논문심사료와 대응)
		5332 실습수입	×	○	실험·실습 등의 결과로 인한 부산물의 매각수입 또 는 실험용역수입
		5339 기타교육부대수입	×	○	그 밖의 교육 부대수입
	5410 예금이자수입		○	○	
			○	○	
		5411 예금이자	○	○	각종 예금이자수입(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
	5420 기타교육외 수입		○	○	
		5421 잡수입	○	○	연구간접비·위약금·보험금수입 등의 잡수입
	5430 수익재산 수입		○	×	법인회계의 수익재산수입(수익사업회계로 별도 독립되 어 정리되는 수입 외의 수입)
		5431 임대료수입	○	×	수익용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 료 수입 (보증금은 2221 임대보증금수입에 계상한다)
		5432 배당금수입	○	×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 등
		5433 임·농·수산물수입	○	×	수익용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농장 등으로부터 생 산된 임산물·농산물·수산물의 판매대금

1200 투자·기타 자산·수입	1220 투자·자산 수입	5439 기타·수익·재산·수입	○	×	그 밖의 수익·용 기본·재산·수입
			○	○	
			○	○	
		1221 투자·유가·증권 매각·대	○	○	채권·주식 등의 유가·증권 실제 매각·금액(장부·금액이 아님)
		1222 출자금 회수	○	×	수익·사업 계정의 출자금 또는 투자·금을 회수한 금액
		1224 학교·기업·투자·자산 회수	×	○	학교가 학교·기업으로부터 회수한 투자·금액
		1229 기타·투자·자산·수입	○	○	그 밖의 투자·자산의 회수·금액
	1240 기타·자산·수입		○	○	
		1241 전신·전화·보증·금 회수	○	○	예치한 전신·전화·보증·금을 회수한 금액
		1242 임차·보증·금 회수	○	○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임차할 때 예치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금액
		1243 장기·대여·금 회수	○	○	대여했던 장기·대여·금을 당기에 회수한 금액
		1244 수익·용·예·금 인출	○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탁·예·금의 인출
		1249 기타·자산 수입	○	○	그 밖의 자산의 매각 또는 회수·금액
			○	○	※예산·편성(유동·자금·화)을 필요로 함
	1250 원·금·보·존·기 금·인·출·수·입	1251			※1250항목과 3150항목을 대응시키기 위하여 1251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52 원·금·보·존·연구·기·금 인출	○	○	원·금·보·존·연구·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금·액
		1253 원·금·보·존·건·축·기·금 인출	○	○	원·금·보·존·건·축·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금·액
		1254			

1300 고정자산매각 수입	1260 임의기금인출 수입	원금보존장학기금 인출 1255	○	○	원금보존장학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원금보존특정목적 기금인출	○	○	원금보존특정목적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	○	※예산편성(유동자금화)을 필요로 함
		1261			※1260항목과 3160항목을 대응시키기 위하여 1261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62			
		임의연구기금인출 1263	○	○	임의연구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임의건축기금인출 1264	○	○	임의건축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임의장학기금인출 1265	○	○	임의장학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임의퇴직기금인출 1266	○	○	임의퇴직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임의특정목적기금 인출	○	○	임의특정목적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310 유형고정자산 매각수입		○	○	
		1311			
		토지 매각대	○	○	토지(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2			
		건물 매각대	○	○	건물(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3			
		구축물 매각대	○	○	구축물(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4			
		기계·기구 매각대	○	○	기계·기구(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5			
		집기비품 매각대	○	○	집기비품(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6			
		차량운반구 매각대	○	○	차량(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7			
		도서 매각대	○	○	도서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8			

2100 유동부채입금	1320 무형고정자산 매각수입	유물 매각대	×	○	유물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	○	
		1321 무형 고정자산 매각대	○	○	특허권·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자산의 매각대금 총액(상각액은 제외한다)
	2110 단기차입금		○	○	
			○	○	
		2111 단기차입금 차입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
2200 고정부채입금	2210 장기차입금		○	○	
			○	○	
		2211 장기차입금 차입	○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차입금의 차입(외화장기차입금을 포함한다)
	2212 차관도입		○	○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에 따른 원화 입금액
		2213 학교채 발행	○	○	학교채 발행에 따른 차입액
			○	○	
	2220 기 타 고정부채		○	○	토지·건물·기계 등을 임대하고 받는 각종 보증금수입
		2221 임대보증금수입	○	○	
		2229 기타고정부채수입	○	○	그 밖의 장기부채 발생으로 인한 자금수입
3100 기본금	3110 출연기본금		○	○	
			○	○	
		3111 설립자기본금	○	×	설립자 및 이사장,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
	3112 법인		×	○	토지와 건축물에 상당하는 기본금(1210 설치학교와 대응)
미사용 전기 이월 자금	전기이월자금		○	○	기초 유동자산-기초 유동부채 ※ 전기말 자금계산서의 차기이월 자금과 일치
	1100 기초유동자산	1110	○	○	

		유동자금	○	○	기초 재무상태표 상의 유동자금 총액
		1120			
		기타 유동자산	○	○	기초 재무상태표 상의 기타유동자산 총액
	2100				
	기초유동부채		○	○	
		2120			
		예수금	○	○	기초 재무상태표 의 예수금 총액
		2130			
		선수금	○	○	기초 재무상태표 상의 선수금 총액
		2140			
		기타유동부채	○	○	기초 재무상태표 상의 기타유동부채 총액
자금수입 총계			○	○	

비 고 :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자금수입총계는 자금지출총계와 일치해야 함.

2. 지출 항목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4100					
보수			○	○	
	4110				
	교원보수		○	○	
		4111			
		교원급여	×	○	교원의 정액급여(인건비성 연구보조비를 포함하되, 정액수당은 제외한다)
		4112			
		교원상여금	×	○	교원의 상여금
		4113			
		교원각종수당	×	○	초과강의료·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학생지도비 등 교원의 각종 수당
		4114			
		교원법정 부담금	×	○	교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4115			
		시간강의료	×	○	정규 교육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강의료
		4116			
		특별강의료	○	○	비정규 교육과정의 강의(강연)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4117			
		교원퇴직금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4118			
		조교인건비	×	○	유급조교(장학조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

4200 관리·운영비	4120 직원보수		○	○	상여금·각종 수당·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4121 직원급여		○	○	직원의 정액급여
	4122 직원상여금		○	○	직원의 상여금
	4123 직원각종수당		○	○	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 등 직원의 각종 수당
	4124 직원법정부담금		○	○	직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4125 임시직인건비		○	○	임시직 직원의 급여·상여 및 각종 수당
	4126 임금		○	○	일용 인부의 임금
	4127 직원 퇴직금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	○	
	4210 시설 관리비		○	○	
	4211 건축물관리비		○	○	건축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비
	4212 장비관리비		○	○	공구, 비품, 기계·기구류의 수선 및 수리비
	4213 조경관리비		○	○	조경·운동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4214 박물관관리비		×	○	박물관 및 유물관리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4215 시설 용역비		○	○	청소·경비 등 시설용역 비용
	4216 보험료		○	○	건축물·시설물·동산 등의 재해보험료
	4217 리스·임차료		○	○	토지·건물·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4219 기타시설관리비		○	○	그 밖의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4220 일반 관리비		○	○	
	4221 여비 교통비		○	○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4222 차량 유지비		○	○	차량 유지에 드는 유류비·수리비 등 (다만, 보험료는 4

				216 보험료에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4228 각종 세금·공과금에 계상한다)
	4223 소모품비	○	○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용(복사용지·프린트용지·간행물구독료 등 각종 사무용품비)
	4224 인쇄·출판비	○	○	각종 서식 및 유인물의 인쇄비와 제본비
	4225 난방비	○	○	난방 등에 드는 연료구입비 등
	4226 전기·수도료	○	○	전기·수도요금
	4227 통신비	○	○	전신·전화·우편요금 등의 통신비
	4228 각종 세금·공과금	○	○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공과금, 각종 협회비 및 자동차세
	4229 지급 수수료	○	○	면허·허가·인가·등록 및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에 드는 수수료
4230 운영비		○	○	
	4231 복리 후생비	○	○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급여 시 지급하는 식대수당은 제외한다)와 의복·개인장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4232 교육·훈련비	○	○	교직원의 교육·훈련에 지출하는 비용
	4233 일반 용역비	○	○	감사·세무·감정 등 일반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
	4234 기관장 업무 추진비	○	○	기관장(이사장 및 총장)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5 상임이사 업무 추진비	○	×	상임이사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6 기타 업무 추진비	○	○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교직원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7 홍보비	○	○	신문 공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작 경비
	4238 회의비	○	○	각종 회의에 지출하는 비용
	4239 행사비	○	○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식 등의 행사에 지출하는 비용
	4240 선교비	○	○	종교계 법인 및 학교의 선교활동비

4300 연구·학생 경비	4310 연구비	4241 기타 운영비	○	○	그 밖의 운영비
			○	○	
			×	○	
		4311 연구비	×	○	교원 및 직원 연구비
		4312 연구 관리비	×	○	연구용 도서 구입, 연구결과 보고서 출판 등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4320 학생경비		○	○	
		4321 교외장학금	○	○	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 등록금회계와비등록금회계 합산시 당해 5231 교육부 보조금 중 국 가장학금으로 등록금수입을 지원 한 금액은 교외장학금 지출 (4321)과 상계처리하여 순액으로 표시
		4322 교내장학금	○	○	(등록금회계) 등록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비등록금회계) 적립금, 적립이자 등의 재원으로 지 급하는 장학금
		4323 실험 실습비	×	○	실험·실습교육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실험실습 기 자재 구입비는 1314 기계·기구 매입비에 계상한다)
		4324 논문 심사료	×	○	논문심사에 드는 비용 (5331 논문심사수입과 대응)
		4325 학생 지원비	×	○	교내신문 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보 조 및 학생행사보조 등 학생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지출 하는 각종 비용
		4329 기타 학생경비	×	○	그 밖의 학생경비
	4330 입시 관리비		×	○	5310 입시수수료수입과 대응
		4331 입시수당	×	○	입학시험관리 담당 교직원의 수당
		4332 입시경비	×	○	입학시험에 드는 소모품비·수수료·인쇄비·광고료· 임차료·식사비 등의 비용
			○	○	
4400 교육외비용	4410 지급이자		○	○	
		4411 지급이자	○	○	차입금·차관 등에 대한 이자 지급액

4500 전출금	4420 기타교육외 비용		○	○	
	4421 잡손실		○	○	예측하지 못한 교육 외 특별비용
	4510 전출금		○	○	
	4511 경상비전출금		○	×	법인이 학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연구비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4512 법정부담전출금		○	×	법인이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의료보험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4513 자산 전출금		○	×	법인이 학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출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출하는 현금
	4514 부속병원전출금		○	×	법인이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각종 전출금
	4515 특별회계전출금		○	○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4516 교내 전출금		×	○	교내의 다른 회계 조직에 전출하는 금액 (5216 교내전입금과 대응)
	4519 비등록금회계 전출금		×	○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세목 구분
	454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출 금		○	○	
	4541 산학협력단 전출금		○	○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4542 학교기업 전출금		○	○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에서 학교기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4600 예비비	4610 예비비		○	○	
	4611 예비비		○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예비비의 예산

1200 투자·기타 자산지출	1210 설치·학교		○	○	을 빼서 해당 과목에 늘린다)
		1211 대학	○	×	법인회계에서 대학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1212 전문대학	○	×	법인회계에서 전문대학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1213 원격대학	○	×	법인회계에서 원격대학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1214 유·초·중·고교	○	×	법인회계에서 유·초·중·고교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1215 부속병원	○	×	법인회계에서 부속병원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1220 투자자산지출		○	○	
		1221 투자 유가증권 매입대	○	○	채권·주식 등 투자유가증권의 매입대금
		1222 출자금지출	○	×	수익사업 및 수익을 목적으로 출자하는 금액
		1223 부속병원투자지출	○	×	부속병원에 투자하는 금액(1215 부속병원 계상금액 제외)
		1224 학교기업투자지출	×	○	학교가 학교기업에 기본금(출자금)으로 투자하는 금액
	1240 기타자산지출	1229 기타투자자산지출	○	○	그 밖의 투자자산의 투자액
			○	○	
		1241 전신·전화보증금지출	○	○	전신 및 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
		1242 임차보증금지출	○	○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임차보증금 지급액
		1243 장기대여금지출	○	○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대여금의 대여

1250 원금보존기금 적립	1244 수익용예금 예치	○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탁 예금의 예치
	1249 기타자산지출	○	○	그 밖의 자산의 취득 지출액
		○	○	3150과 대응
	1251			※3150항목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 하지 않음
	1252 원금보존연구기금 적립	○	○	원금보존연구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53 원금보존건축기금 적립	○	○	원금보존건축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54 원금보존장학기금 적립	○	○	원금보존장학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55 원금보존특정목적 기금적립	○	○	원금보존특정목적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	○	3160과 대응
	1261			※3160항목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60 임의기금적립	1262 임의연구기금적립	○	○	임의연구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63 임의건축기금적립	○	○	임의건축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64 임의장학기금적립	○	○	임의장학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65 임의퇴직기금적립	○	○	임의퇴직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66 임의특정목적기금 적립	○	○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	○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예산(자금)이 수반될 때에는 자금 항목이나, 기증 등과 같이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고 정자산 증가는 자금 항목이 아닌 대차대조표 증가 항목임
	1311 토지매입비	○	○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2 건물매입비	○	○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3 구축물매입비	○	○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0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2100 유동부채상환	1320 무형고정자산 취득비	1314 기계·기구매입비	○	○	기계 및 기구 등의 구입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5 집기비품매입비	○	○	비품 및 집기 등의 구입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6 차량운반구매입비	○	○	차량구입비와 그 부대비용(취득세·등록세 등)
		1317 도서 구입비	○	○	도서관 비치용 도서구입비와 부대비용(각 부서의 간행물 구독료는 4223 소모품비에 계상한다)
		1318 박물관유물구입비	×	○	박물관 유물의 구입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9 건설중인자산	○	○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건설 관련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건설을 위해 지출한 도급금액 등 포함)
		1321 무형고정자산취득비	○	○	특허권·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자산의 취득대금
			○	○	
		2110 단기차입금 상환	○	○	
		2111 단기차입금상환	○	○	단기차입금의 실제상환액(장부가액이 아님)
2200 고정부채상환	2210 장기차입금 상환	2112 유동성장기부채상환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장기차입금, 차관, 학교채의 실제상환액(장부가액이 아님)
		2213 학교채상환	○	○	학교채의 상환액
			○	○	
		2211 장기차입금상환	○	○	장기차입금의 실제상환액(외화차입금의 경우 상환차손익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장부가액이 아님)
		2212 차관상환	○	○	차관 실제상환액(상환차손익을 포함한 금액, 장부가액이 아님)
		2213 학교채상환	○	○	학교채의 상환액
			○	○	
		2220 기타고정부	○	○	

	채상환	2221 임대보증금환급	○	○	임대기간의 종료로 부채로 받아 둔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는 금액
		2222 장기미지급금상환	○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미지급금의 상환금액
		2229 기타고정부채의 상환	○	○	그 밖의 고정부채의 상환액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차기이월자금		○	○	당기말 유동자산-당기말 유동부채 (다음 회계연도 전기이월자금과 일치해야 함)
	1100 기말 유동자산	1110 유동자금	○	○	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유동자금 총액
		1120 기타 유동자산	○	○	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기타유동자산 총액
	2100 기말 유동부채	2120 예수금	○	○	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예수금
		2130 선수금	○	○	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선수금
		2140 기타 유동부채	○	○	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그 밖의 유동부채 총액
자금지출 총계			○	○	

비 고 :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자금지출 총계는 자금수입 총계와 일치해야 함.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제17조 관련)

1. 자 산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1100 유동자산	1110 유동자금		○	○	
			○	○	
		1111 현 금	○	○	자금 출납부서에서 관리·보관하는 현금[일반 업무 부서의 소액현금 선지급액을 포함한다]
		1112 예 금	○	○	금융회사에 예치된 각종 예금
	1120 기타유동자산		○	○	
		1121 단기 대여금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다른 회계 조직 등에 대한 일시적 대여금
		1122 선급금	○	○	물품 및 용역 구입비용 등의 선지급액
		1123 미수금	○	○	일반적인 거래의 미수채권
		1124 가지급금	○	○	액수나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각종 비용의 선지급액 (소액현금은 1111 현금에 계상한다) (결산시 비망 계정)
		1125 선급 법인세	○	○	예금이자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세액 중 차 후 환급이 되는 법인세
		1126 받을어음	○	○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1129 기타 유동자산	○	○	회수 가능기간이 1년 미만인 그 밖의 유동자산
	1210 설치학교		○	○	
			○	×	
		1211 대학	○	×	대학회계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 일반회계의 투자액 (3112 법인과 대응)
		1212 전문대학	○	×	전문대학회계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 일반회계의 투자액 (3112 법인과 대응)
		1213 원격대학	○	×	원격대학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 일반회계의 투자액(3112 법인과 대응)
		1214 유·초·중·고교	○	×	유·초·중·고교회계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 일반회계의 투자액(3112 법인과 대응)
		1215 부속병원	○	×	부속병원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회계의 투자액(3112 법인과 대응)
	1220 투자자산		○	○	
		1221			

1300 고정자산	1240 기타자산	투자 유가증권 1222	○	○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사채 및 국공채 등
		출자금 1223	○	×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회사 외의 투자액
		부속병원투자 1224	○	×	부속병원에 투자하는 금액(1215 부속병원 계상금액 제외)
		학교기업 투자 1225	×	○	학교가 학교기업에 투자하는 금액
		등록금회계 1229	×	○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을 등록금회계로 전출한 금액
		기타 투자자산	○	○	그 밖의 각종 투자자산
			○	○	
		1241 전신·전화보증금	○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
		1242 임차 보증금	○	○	부동산 등의 임차보증금
		1243 장기 대여금	○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각종 대여금
		1244 수익용 예금	○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탁예금
		1249 기타자산	○	○	그 밖의 자산
			○	○	
	1250 원금보존기 금	1251			※3150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52 원금보존연구기금	○	○	연구 장려 등을 위하여 원금보존으로 별도로 예치한 자금 등
		1253 원금보존건축기금	○	○	건축비용 충당을 위하여 원금보존으로 별도로 예치한 자금 등
		1254 원금보존장학기금	○	○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원금보존으로 별도로 예치한 자금 등
		1255 원금보존특정목적 기금	○	○	학교발전 등을 위하여 원금보존으로 별도로 예치한 자금 등
	1260 임의기금		○	○	
		1261			※3160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62			
		임의연구기금	○	○	연구 장려 등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263 임의건축기금	○	○	건축비용 충당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264 임의장학기금	○	○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265 임의퇴직기금	○	○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266 임의특정목적기금	○	○	학교발전 등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	○	
			○	○	
	1310				

	유형 고정자산		○	○	
	1311 토지		○	○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
	1312 건물		○	○	건물 및 냉난방·보일러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1313 건축물		○	○	저수지·정원설비·굴뚝·각종 토목설비 또는 인공 구조물 등
	1314 기계기구		○	○	기계장치 및 각종 기구
	1315 집기비품		○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집기비품 및 상당한 가치를 지닌 전산프로그램 등
	1316 차량 운반구		○	○	자동차 및 그 밖의 운반구
	1317 도서		○	○	도서비치용 도서 (일반부서의 간행물은 제외한다)
	1318 박물관유물	×	○	○	박물관의 각종 유물
	1319 건설중인자산		○	○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건설 관련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건설을 위해 지출한 도급금액 등 포함)
	1320 무형 고정자산		○	○	
	1321 무형 고정자산		○	○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광업권·어업권 등 각종 무형고정자산
자산 총계			○	○	

비 고 :

-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 자산 총계는 부채 및 기본금 총계와 일치해야 함.

2. 부채 및 기본금

과 목			현 행		해 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2100 유동부채			○	○	
	2110 단기 차입금		○	○	
		2111 단기 차입금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차입금 등
		2112 유동성장기부채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장기차입금, 차관, 학교채 등
		2113 유동성학교채발행차금	○	○	상환기간 1년 이내 도래하는 학교채 액면가와 실제발행액의 차금 중 미상각액(할증발행차금 +, 할인발행차금 - 표시)
	2120				

2200 고정부채	예수금	2121	○	○	
		일반 예수금	○	○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연금·의료보험 등 일시적 예수액
		2122			
		각종세금 예수금	○	○	갑근세 원천징수액 등 일시적인 각종 세금 예수금
		2123			
		특별회계예수금	○	○	특별회계로부터 예수한 금액
		2129			
	2130 선수금	기타 예수금	○	○	그 밖의 일시 예수금
			○	○	
		2131			
		등록금선수금	×	○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납된 등록금 등
		2132			
	2140 기타 유동부채	학교채선수금	○	○	학교채 청약금(미발행 금액)
		2139			
		기타선수금	○	○	그 밖의 선수금
			○	○	
		2141			
		미지급금	○	○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 및 비용
		2142			
		가수금	○	○	송금자나 입금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지로계좌 등의 입금액 (결산 시 비망계정)
		2143			
		지급어음	○	○	일반적 매입거래 대가로 발행한 어음금액
		2149			
		기타 유동부채	○	○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그 밖의 부채
	2210 장기 차입금		○	○	
			○	○	
		2211			
		장기 차입금	○	○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외화 장기차입금을 포함한다)
		2212			
		차관	○	○	각종 차관의 미상환 잔액
		2213			
	2214 학교채발행차금	학교채	○	○	학교채 미상환액(액면가)
			○	○	
		학교채발행차금	○	○	학교채 발행 시 액면가와 실제발행액의 차금 중 미상각액(할증발행차금 +, 할인발행차금 - 표시)
	2220 기타 고정부채		○	○	
		2221			

2300 감가상각누계액	2310 감가상각누계액	임대 보증금 2222	○	○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
		장기 미지급금 2229	○	○	지급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미지급금
		기타 고정부채	○	○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그 밖의 부채
			○	○	
		2312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3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	구축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구축물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4 기계기구감가상각누계액	○	○	기계기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기구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5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	○	집기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집기비품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6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운반구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317 도서감가상각누계액	○	○	도서의 감가상각 누계액 (도서 차감계정이며 내용연수에 거쳐 상각함)
2400 사용수익권	2410 사용수익권		○	○	
		2411 사용수익권	○	○	BTO방식으로 준공된 건물의 운영권에 대한 회계처리 (건물 차감계정이며 권리제공기간에 거쳐 상각함)
			○	○	
25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5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5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법인 및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준비금(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	○	
3100 기본금	3110 출연 기본금	3111 설립자기본금	○	×	설립자 및 이사장,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
		3112			

3150 원금보존적 립금	법인 3113 기타 기본금	×	○	토지와 건축물에 상당하는 기본금(1210 설치학교와 대응)
		○	×	설립자기본금을 제외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 산에 상당하는 기본금
		○	○	1250 원금보존기금과 대응
	3151			※ 3161 항목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 용하지 않음
	3152 원금보존연구적립금	○	○	원금보존연구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53 원금보존건축적립금	○	○	원금보존건축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54 원금보존장학적립금	○	○	원금보존장학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55 원금보존특정목적적 립금	○	○	원금보존특정목적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60 임의적립금	○	○	1250 임의기금과 대응
	3161			※ 3151 항목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 하지 않음
	3162 임의연구적립금	○	○	임의연구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63 임의건축적립금	○	○	임의건축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64 임의장학적립금	○	○	임의장학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65 임의퇴직적립금	○	○	임의퇴직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66 임의특정목적적립금	○	○	임의특정목적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70 기본금조정	○	○	
	3171 투자유가증권평가손 익	○	○	당기의 운용결과로 볼 수 없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 익 등의 미실현보유손익(이익은 +, 손실은 -로 표 시)
	3172 기금평가손익	○	○	당기의 운용결과로 볼 수 없는 기금평가손익 등의 미 실현보유손익(이익은 +, 손실은 -로 표시)
	3173 비등록금회계	×	○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을 등록금 회계로 전입받은 금액
	3174 자산재평가차액	○	○	자산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익(이익은 +, 손실은 -로 표시)
3130 운영차액	3131 전기이월운영차액	○	○	전기 이월운영차액(전기 재무상태표상의 3130과 일치해야 한다)
	3132			

		당기운영차액	○	○	당기 운영차액(운영계산서상의 당기 운영차액과 일치해야 한다)
부채 및 기본금 총계			○	○	

비 고 :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부채 및 기본금 총계는 자산 총계와 일치해야 함.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제17조 관련)

1. 운영수익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5100 등록금 및 수강 료수입	5110 등록금수입	5110	×	○	
		5111	×	○	
		학부입학금	×	○	대학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5112	×	○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대학원입학금			
		5113	×	○	대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학부수업료			
	5120 수강료수입	5114	×	○	대학원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대학원수업료			
		5121	×	○	특별강좌·평생교육강좌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5200 전입및 기부수입	5210 전입금수입	5211	○	○	
		경상비전입금	×	○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의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
		5212	×	○	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의료보험 등)으로 받는 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5213	×	○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입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받는 현금 및 물품
		자산전입금			
		5214	○	○	학교나 법인이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으로부터 전입받는 금액
		부속병원전입금			
		5215			

5220 기부금수입	특별회계전입금 5216	○	○	특별회계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교내 전입금	×	○	교내 다른 회계 조직(특별회계 제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4516 교내 전출금과 대응)
	5217 수익사업전입금	○	×	수익사업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5218 등록금회계 전입금	×	○	비등록금회계가 등록금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세목 구분
	5221 일반기부금	○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 단,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학교회계로만 세입 처리 가능
	5222 지정기부금	○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연구기부금은 5223 연구기부금에 계상한다)
	5223 연구기부금	○	○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는 기부금
	5224 현물기부금	○	○	토지·건축물·실험기자재·유물 등의 기증받은 현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5230 국고보조금	○	○	
	5231 교육부	○	○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 세목에서 국가장학금지원금과 기타지원금으로 구분하고,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합산시 당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수입을 지원한 금액은 교외 장학금 지출(4321)과 상계처리하여 순액으로 표시
	5232 기타국고지원	○	○	교육부 외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받는 보조금
	5233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524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	×	○	
	5241			

5300 교육부대수입		산학협력단전입금 5242	×	○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및 물품
		학교기업전입금	×	○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및 물품
			×	○	
	5310 입시수수료 수입		×	○	4330 입시관리비와 대응
		5311 입학원서대	×	○	입학원서 판매대금
		5312 수험료	×	○	입시지원자로부터 받는 수험료수입
	5320 증명· 사용료수입		×	○	
		5321 증명료	×	○	졸업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하고 받는 각종 수수료 수입
		5322 대여· 사용료	×	○	강당, 교실, 기계·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대여하고 받 는 이용료와 복사기, 학교버스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로부터 받는 사용료(임대보증금수입은 2221 임대보증 금수입에 계상하고, 법인의 수익용 재산 임대료수입 은 5431 임대료수입에 계상한다)
	5330 기타교육 부대수입		×	○	
		5331 논문심사료 수입	×	○	학생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료수입(4324 논문심사료와 대 응)
		5332 실습수입	×	○	실험·실습 등의 결과로 인한 부산물의 매각수입 또는 용역수입
		5339 기타교육부대수입	×	○	그 밖의 교육 부대수입
5400 교육외 수입			○	○	
	5410 예금이자 수입		○	○	
		5411 예금이자	○	○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의 이 자수입을 포함한다)
	5420 기타교육 외수입		○	○	
		5421 잡수입	○	○	연구간접비·위약금·보험금수입 등 잡수입

55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5430 수익재산 수입	5422 외화환산 이익	○	○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회수 및 상환에 따른 이익은 5423 외환차익에 계상한다)
		5423 외환차익	○	○	외화자산의 회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의 초 과금액 및 외화부채의 상환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미달금액(자금계산서에는 회수 및 상환액의 총계를 원인 과목에 계상한다)
		5424 투자유가증권처분 이익	○	○	투자유가증권의 매각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5426 고정자산 처분이익	○	○	고정자산 매각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자금계산 서에는 매각액 총계를 원인 과목에 계상한다)
		5428 전기오류수정이익	○	○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오 류 수정이익
			○	×	법인회계의 수익재산 수입(수익사업회계로 별도 독 립되어 정리되는 수입 외의 수입)
		5431 임대료 수입	○	×	수익용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 료수입(임대보증금은 2221 임대보증금수입에 계상 한다)
		5432 배당금 수입	○	×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받는 배당금등
		5433 임·농·수산물 수입	○	×	수익용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농장 등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농산물·수산물의 판매대금
		5439 기타수익 재산수입	○	×	그 밖의 수익용 기본재산수입
551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55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	○	
			○	○	
			○	○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이체)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환 입액을 처리하기 위한 금액(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운영수익 총계			○	○	

비 고 :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운영수익 총계는 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함.

2. 운영비용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4100 보수	4110 교원보수	4111 교원급여	×	○	교원의 정액급여(인건비성 연구보조비를 포함하되, 정액수당은 제외한다) 교원의 상여금 초과강의료·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학생 지도비 등 교원의 각종 수당 교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정규 교육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강의료 비정규 교육과정의 강의(강연)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유급조교(장학조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각종 수당·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4112 교원상여금	×	○	
		4113 교원각종수당	×	○	
		4114 교원법정부담금	×	○	
		4115 시간강의료	×	○	
		4116 특별강의료	○	○	
		4117 교원퇴직금	×	○	
		4118 조교인건비	×	○	
	4120 직원보수	4121 직원급여	○	○	
		4122 직원상여금	○	○	
		4123 직원각종수당	○	○	
		4124 직원법정부담금	○	○	
		4125 임시직인건비	○	○	
		4126			

4200 관리·운영비	4210 시설관리비	임금 4127	○	○	일용 인부의 임금
		직원퇴직금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	○	
		4210 시설관리비	○	○	
		4211 건축물관리비	○	○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비
		4212 장비관리비	○	○	공구, 비품, 기계·기구류의 수선 및 수리비
		4213 조경관리비	○	○	조경·운동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4214 박물관관리비	×	○	박물관 및 유물 관리에 지출하는 각종비용
		4215 시설용역비	○	○	청소·경비 등 시설용역 비용
		4216 보험료	○	○	건축물·시설물·동산 등의 재해보험료
		4217 리스·임차료	○	○	토지·건물·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4219 기타시설관리비	○	○	그 밖의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4220 일반관리비		○	○	
		4221 여비교통비	○	○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4222 차량유지비	○	○	차량 유지에 드는 유류비·수리비 등 (다만, 보험료는 4216 보험료에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4228 각종 세금·공과금에 계상한다)
		4223 소모품비	○	○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용(복사용지·프린트용지·간행물구독료 등 각종 사무용품비)
		4224 인쇄·출판비	○	○	각종 서식 및 유인물의 인쇄비, 제본비 등
		4225 난방비	○	○	난방 등에 드는 연료구입비 등
		4226 전기·수도료	○	○	전기·수도요금
		4227 통신비	○	○	전신·전화·우편요금 등의 통신비
		4228 각종세금·공과금	○	○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공과금, 각종 협회비 및 자동차세
		4229 지급수수료	○	○	면허·허가·인가·등록 및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에 드는 수수료
			○	○	
	4230 운영비		○	○	
			○	○	
			○	○	
			○	○	
			○	○	

4300 연구학생경비	4250 감가상각비	4231 복리후생비	○	○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급여 시 지급하는 식대수당은 제외한다)와 의복·개인장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4232 교육·훈련비	○	○	교직원의 교육·훈련에 지출하는 비용
		4233 일반용역비	○	○	감사·세무·감정 등 일반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
		4234 기관장 업무 추진비	○	○	기관장(이사장 및 총장)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5 상임이사 업무 추진비	○	×	상임이사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6 기타 업무 추진비	○	○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교직원의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7 홍보비	○	○	신문 광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작경비
		4238 회의비	○	○	각종 회의에 지출하는 비용
		4239 행사비	○	○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식 등의 행사에 지출하는 비용
		4240 선교비	○	○	종교계 법인 및 학교의 선교활동비
		4241 기타운영비	○	○	그 밖의 운영비
		4252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	○	※ 운영계산서에만 해당됨
		4253 무형고정자산상각비	○	○	유형고정자산의 해당 회계연도 감가상각액
			○	○	무형고정자산의 해당 회계연도 상각액
	4310 연구비	4311 연구비	×	○	
		4312 연구관리비	×	○	교원 및 직원 연구비
			×	○	연구용 도서 구입, 연구결과 보고서 출판 등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4320 학생경비		○	○	
		4321 교외장학금	○	○	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합산시 당해 5231 교육부 보조금 중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수입을

4400 교육외비용	지원 한 금액은 교외장학금 지출(4321)과 상계 처리하여 순액으로 표시	4322 교내장학금	○	○	(등록금회계) 등록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비등록금회계) 적립금 및 적립이자, 수입이자 등의 재 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4323 실험실습비	×	○	실험·실습교육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실험·실습 기 자재 구입비는 1314 기계·기구 매입비에 계상한다)
		4324 논문심사료	×	○	논문심사에 드는 비용(5331 논문심사수입과 대응)
		4325 학생지원비	×	○	교내신문 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 보 조 및 학생행사 보조 등 학생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
		4329 기타학생경비	×	○	그 밖의 학생경비
		4330 입시관리비	×	○	5310 입시수수료수입과 대응
		4331 입시수당	×	○	입학시험관리 담당 교직원의 수당
		4332 입시경비	×	○	입학시험에 드는 소모품비·수수료·인쇄비·광고료·임 차료·식사비 등의 비용
		4410 이자비용	○	○	
		4411 지급이자	○	○	차입금·차관 등에 대한 이자지급액(학교채발행차금 상각액을 포함)
		4420 기타교육 외 비용	○	○	
		4421 잡손실	○	○	예측하지 못한 교육 외 특별비용
		4422 외화환산손실	○	○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회수 및 상환에 따른 손실은 4423에 계상한다)
		4423 외환차손	○	○	외화자산 회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금액 및 외화부채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 우 초과금액(자금계산서에는 회수 및 상환금액의 총계 를 계상한다)
		4424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	○	투자유가증권 매각 대금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미 달 금액
		4426 고정자산처분손실	○	○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 금액(자금계산서에는 매각액 총계를 계상한다)

4500 전출금	4510 전출금	4428 고정자산폐기손실	○	○	고정자산의 폐기에 의해 발생한 손실
		4429 전기오류수정손실	○	○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 수정손실
			○	○	
			○	○	
		4511 경상비전출금	○	×	법인이 학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연구비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4512 법정부담전출금	○	×	법인이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의료보험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4513 자산전출금	○	×	법인이 학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출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출하는 현금
		4514 부속병원전출금	○	×	법인이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각종 전출금
		4515 특별회계전출금	○	○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4516 교내전출금	×	○	교내의 다른 회계 조직에 전출하는 금액(5216 교내 전입금과 대응)
		4519 비등록금회계 전출금	×	○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세목 구분
	454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출금		○	○	
		4541 산학협력단 전출금	○	○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4542 학교기업 전출금	○	○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에서 학교기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4600 고유목적사업			○	○	

준비금 전입액	461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	○	
	46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	○	법인 및 학교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하여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준비금 전입액
운영비용 합계			○	○	
3100 기본금대체액	3120 각종적립금 대체액	—	○	○	각종 적립기금에 상당하는 운영차액의 대체액
운영차액 대체액			○	○	각종 적립금 인출에 따른 적립금 운영차액으로의 대체액
당기 운영차액		3132 당기 운영차액	○	○	운영수익 총계-운영비용 합계-각종적립금 대체액+운영차액 대체액(기본금 대체액을 각종적립금 대체액으로 변경)
비용 총계			○	○	

비 고 :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비용 총계는 운영수입 총계와 일치해야 함.

자 금 예 산 서

(. . . 부터 . . . 까지)

1. 수입

(단위: 원)

① 과 목			② 회계연도	③ 회계연도	④ 증감	⑥ 산출근거
관	항	목				
⑦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자금수입총계						

2. 지출

(단위: 원)

⑧ 과 목			⑨ 회계연도	⑩ 회계연도	⑪ 증감	⑫ 산출근거
관	항	목				
⑬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⑭ 자금지출총계						

작성방법

-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를 참고하여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자금수입과 자금지출을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 자금수입 총계와 자금지출 총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 ②, ⑨란은 당해연도 예산을 ③, ⑩란은 전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적습니다.
- ⑥, ⑫란은 당해연도 목별 예산에 대한 근거를 작성합니다.
- ⑦란은 전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의 미사용차기이월금액을 적습니다.
-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 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 ⑬란은 미사용차기이월금액은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 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단위: 원)

①	②	차입 내역		⑤	⑥	⑦	⑧	⑨
허가 근거	차입처	③ 연월일	④ 금액	전기말 잔액	지급 이자율	잔존상환 기간	차기상환 예정액	비고
⑩ 합계								

작성 방법

1. 전기말의 차입금 명세를 추정하여 항목별로 적습니다.
2. ①란은 교육부에서 허가한 문서번호를 적습니다.
3. ②~⑧란은 각 차입 건별로 차입처, 차입시기와 금액, 전기말 잔액, 차입이자율, 잔존상환 기간 및 차기 상환 예정액을 각각 적습니다.
4. 법인(학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추가·삭제)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단위 : 원)

적립금 유형	적립목적		전기 이월 추정액 (a)	적립금 세부 용도	적립금 운용계획		기말 추정 잔액 (d=a+b- c)	적립금 사용계획							
					당해연도 적립액(b)			당해연도 사용액(c)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계 (e)
					금액	적립 재원		금액	사용 내역						
원금보존	연구														
	건축														
	장학														
	퇴직														
	특정 목적														
임의	연구														
	건축														
	장학														
	퇴직														
	특정 목적														
합계															

작성방법

1. 적립금유형: 원금보존(원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이자만 사용 가능한 적립금), 임의(원금과 이자 모두 사용 가능한 적립금)
2. 전기이월추정액: 전기 **재무상태표 상** 누적적립금 추정액
3. 적립금 세부용도: 적립 목적보다 구체적인 세부용도 기재
4. 적립재원: 기부금수입, 법인전입금, 감가상각비상당액의 등록금회계전입금, 이자수익, 용도변경 등으로 기재
5. 적립금 사용계획: 누적적립금의 향후 연도별 사용계획으로서 기말추정잔액(d)과 적립금 사용계획 계(e)값은 일치해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추가경정자금예산서

(. . . 부터 . . . 까지)

1. 수 입

(단위: 원)

과 목			①	②	③	④
관	항	목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①-②=③	산출근거
자금수입총계						

2. 지 출

(단위: 원)

과 목			①	②	③	④
관	항	목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①-②=③	산출근거
자금지출총계						

작성방법

- 별지 제1호서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경정자금예산서를 작성합니다.
-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자금수입과 자금지출을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 자금수입 총계와 자금지출 총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 ②란은 당해연도 기정예산액(본예산 또는 이전 추경예산액)을, ③란은 추경예산액을 적습니다.
- ④란은 추경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입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재 무 상 태 표

(당기: . . . 현재)

(전기: . . . 현재)

1. 자산

(단위: 원)

과 목		① 당기말		② 전기말	
관·항	목	금 액		금 액	
		목	관·항	목	관·항
③ 자산총계					

2. 부채 및 기본금

(단위: 원)

과 목		① 당기말		② 전기말	
관·항	목	금 액		금 액	
		목	관·항	목	관·항
④ 부채 및 기본금 총계					

작성방법

- 본 서식은 법인(학교)의 자산, 부채, 기본금현황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로서 보고식 작성방법을 따른다.
- 학교의 자산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특정 사용목적 제한 여부에 따라 유동자산·투자및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법인(학교)의 부채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본금은 학교가 소유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으로 출연기본금·적립금·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①란은 당해연도 결산액이며 ②란은 전년도 결산액을 적습니다.
- ③란의 자산총계는 ④란의 부채 및 기본금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투자외기타자산명세서

(단위: 원)

① 구 분		② 내 용	③ 전기 이월액	당기 증감액		⑥ 기말잔액 (③+④-⑤)	⑦ 비 고
				④ 증가액	⑤ 감소액		
항	목						
⑧ 합계							

작성방법

- ①란의 구분에는 재무상태표상 투자외기타자산의 과목 중 항·목의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 ②란은 각 과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적습니다.(예 국공채, 지방채, 전신전화보증금, 임차보증금, 각종대여금 등)
- 법인(학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추가·삭제)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단위: 원)

① 과 목	자산의 증감				⑥ 감가상각 누계액	⑦ 사용 수익권	⑧ 장부가액 (⑤-⑥-⑦)	⑨ 비 고
	② 기초잔액	③ 당기증가액	④ 당기감소액	⑤ 기말잔액 (②+③-④)				
⑩ 합 계								

작성방법

- 1. ①란은 재무상태표 상 항목을 적습니다.(예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도서, 박물관유물, 건설가계정)
- 2. ②란은 전년도 재무상태표 상 결산금액을 적습니다.
- 3. ⑦란은 BT0방식에 의해 취득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으로, 재무상태표 상 당년도 사용수익권 금액을 적습니다.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단위: 원)

① 과 목	자산의 증감				⑥ 상각누계액	⑦ 미상각잔액
	② 기초잔액	③ 당기증가액	④ 당기감소액	⑤ 기말잔액		
⑧ 합 계						

작성방법

- ①란은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세부항목(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영업권 등)을 적습니다.
- ②란은 전년도말 무형자산의 매입가액을 적습니다.
- ③란 및 ④란은 당기의 증가액 및 감소액을 각각 적습니다.
- ⑥란은 무형자산의 당기말까지의 상각누계액을 적습니다.
- ⑦란의 미상각잔액은 **재무상태표**상의 당기말 잔액과 일치합니다.

미지급금명세서

(단위: 원)

① 구 분	② 내 용	③ 금 액		비 고
④ 합 계				

작성 방법

1. ①란은 계정과목을 적습니다.(예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등)
2. ②란은 법인(학교)이 결산일 현재 운영비, 공사대금 등의 미지급한 경비내역을 적습니다.(예 2월 법인카드사용액, ○○공사 등)
3. 아래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은 비교란에 별도로 표기합니다.
 - 학교 또는 법인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급여 및 수당): 미지급 임금
 - 학교 또는 법인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미지급 4대 보험 기관부담금
 - 학교 또는 법인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연체되고 있는 제세공과금: 미지급 제세공과금
4. 법인(학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추가·삭제)이 가능합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 m²)]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세부내역	비 고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유동자산(A)			
	1. 유동자금			
	(1) 사업준비금			
	(2) 자산처분대금			
	(3) 임대보증금			
	(4) 국고보조금			
	(5) 사고이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6) 운용자금			
	(7) 기타			
	2. 기타유동자산			
	(1) 단기대여금			
	(2) 선급금			
	(3) 미수금			
	(4) 가지급금			
	(5) 선급법인세			
	(6) 받을어음			
	(7) 기타유동자산			
	유동부채(B)			
	(1) 예수금			
	(2) 선수금			
	(3) 미지급금			
	(4) 가수금			
	(5) 지급어음			
	(6) 기타유동부채			
미사용 차기이월자금(A-B)				
내역 및 사용계획	사고이월			
	소 계			
	명시이월			
	소 계			
	계속비이월			
	소 계			
	기타이월			
	소 계			
내역 및 사용계획 합계				

※ 작성방법

1. 미사용 차기이월자금과 내역 및 사용계획 합계액은 일치하여야 함
 2.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모두 작성
 3. 내역 및 사용계획에는 유동부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제외
 4. 사고이월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5. 명시이월 :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
 6. 계속비이월 :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미리 일괄하여 정해놓은 경우로서, 당해연도 부담액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
- ※ 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사업의 소요경비를 계속비의 형태로 지출하기로 사전에 정하고, 계속비가 지출되는 첫 회계연도의 학교법인 및 학교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 시 계속비 편성에 대한 의결을 받아 계속비이월 자금을 편성해야 하며, 계속비 편성 기간은 첫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필요 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7호 및 제48호 서식 활용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종합재무상태표

[당기: : 현재
전기: : 현재]

1. 자산

(단위: 원)

과 목		① 법인 회계	② 법인 수익사 업회계	③ 학교 회계	④ 학교 부속병 원회계	⑤ 기타 회계	⑥ (내부 거래 제거)	종합재무상태표	
관·항	목							⑦ 당기	⑧ 전기
자산총계									

2. 부채 및 기본금

(단위: 원)

과 목		① 법인 회계	② 법인 수익사 업회계	③ 학교 회계	④ 학교 부속병 원회계	⑤ 기타 회계	⑥ (내부 거래 제거)	종합재무상태표	
관·항	목							⑦ 당기	⑧ 전기
부채 및 기본금 총계									

총 합 운 영 계 산 서

[당기: . . 부터 . . 까지
전기: . . 부터 . . 까지]

1. 운영수익

(단위: 원)

과 목		① 법인 일반 회계	② 법인 수익사업 회계	③ 학교 회계	④ 학교 부속병 원회계	⑤ 기타 회계	⑥ (내부 거래 제거)	종합운영계산서	
관·항	목							⑦ 당기	⑧ 전기
⑨ 운영수익총계									

2. 운영비용

(단위: 원)

구 분	과 목		① 법인 회계	② 법인 수익사 업회계	③ 학교 회계	④ 학교 부속병 원회계	⑤ 기타 회계	⑥ (내부 거래 제거)	종합운영계산서	
	관 · 항	목							⑦ 결산액	⑧ 예산액
운영 비용										
	⑨ 운영비용합계									
기본금 대체액	⑩ 기본금대체액합계									
	⑪ 설립자기본금대체액									
	⑫ 법인대체액									
	⑬ 제적립금대체액									
	⑭ 기타기본금대체액									
⑮ 당기운영차액										
⑯ 비용총계										

합 산 자 금 계 산 서

(. . . 부터 . . . 까지)

1. 수입

(단위: 원)

과목		① 법인일반 회계	② 학교회계	③ (내부거래 제거)	합산자금계산서		
관·항	목				④ 결산액	⑤ 예산액	⑥ 증감액
자금수입총계							

2. 지출

(단위: 원)

과 목		① 법인일반 회계	② 학교회계	③ (내부거래 제거)	합산자금계산서		
관·항	목				④ 결산액	⑤ 예산액	⑥ 증감액
자금지출총계							

작성방법

1. 법인일반회계와 학교회계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자금수입과 자금지출을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2. ②란은 법인 산하 모든 설치 학교회계(「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합산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은 법인일반회계와 학교회계간의 내부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은 ①번 법인일반회계와 ②번 학교회계 합산 금액에서 ③번 내부거래 금액을 제거한 후 금액을 기재 합니다.
5. ⑤란은 당해연도 최종 추가경정자금예산액(추가경정자금예산액이 없을시 본예산액)을 기재합니다.

합 산 재 무 상 태 표

[당기: . . . 현재
전기: . . . 현재]

1. 자산

(단위: 원)

과 목		①	②	③	합산재무상태표	
관 · 항	목	법인일반 회계	학교회계	(내부거래 제거)	④ 당기	⑤ 전기
자산총계						

2. 부채 및 기본금

(단위: 원)

과 목		①	②	③	합산재무상태표	
관 · 항	목	법인일반 회계	학교회계	(내부거래 제거)	④ 당기	⑤ 전기
부채 및 기본금 총계						

작성방법

1. 법인일반회계와 학교회계의 보고식 작성방법을 따릅니다. 자산총계는 부채 및 기본금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 ②란은 법인 산하 모든 설치 학교회계(「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합산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은 법인일반회계와 학교회계간의 내부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은 ①번 법인일반회계와 ②번 학교회계 합산 금액에서 ③번 내부거래 금액을 제거한 후 금액을 기재 합니다.
5. ⑤란은 전년도 결산 합산재무상태표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합 산 운 영 계 산 서

당기: . . . 부터 . . . 까지
[전기: . . . 부터 . . . 까지]

1. 운영수익

(단위: 원)

과 목		① 법인일반 회계	② 학교회계	③ (내부거래 제거)	합산운영계산서	
관 · 항	목				④ 당기	⑤ 전기
운영수익총계						

2. 운영비용

(단위: 원)

구분	과 목		① 법인일반 회계	② 학교회계	③ (내부거래 제거)	합산운영계산서	
	관 · 항	목				④ 당기	⑤ 전기
운영 비용							
	⑥ 운영비용합계						
기본금 대체액	⑦ 기본금대체액합계						
	⑧ 설립자기본금대체						
	⑨ 법 인 대 체 액						
	⑩ 제적립금대체액						
	⑪ 기타기본금대체액						
⑫ 당기운영차액							
⑬ 비용총계							

210mm×297mm[백상지(80g/㎡)]

작성방법

1. 법인일반회계와 학교회계의 보고식 작성방법을 따릅니다. 운영수익총계는 비용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 ②란은 법인 산하 모든 설치 학교회계(「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합산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은 법인일반회계와 학교회계간의 내부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은 ①번 법인일반회계와 ②번 학교회계 합산 금액에서 ③번 내부거래 금액을 제거한 후 금액을 기재 합니다.
5. ⑤란은 전년도 결산 합산운영계산서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 (○○ 대학교)의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년 월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 (○○대학교)의 년 월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년 월 일

학교법인 ○○○○

감사 ○○○

감사 ○○○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성명 ○○○